

# 서울문화재단 · FAI-AR 협력 거리예술 전문가 양성과정 <공공공간 예술창작> 참가협약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과 참가자 \_\_\_\_\_(이하“협약상대자”라 한다)은 거리예술 전문가 양성과정<공공공간 예술창작> 참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

## 제1조 [협약 개요]

1. “재단”이 운영하고 “협약상대자”가 참가하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프로그램명 : 거리예술 전문가 양성과정<공공공간 예술창작>
  - 기간/장소 : 2015. 10월 ~ 12월 말 / 한국 서울 & 프랑스 마르세유

세부명칭	기간	장소	내용
사전 워크숍	10월~11월	서울거리예술 창작센터 외	참가자 선발 후 해외연수 준비를 위한 개별 리서치, 사전워크숍 진행(2~3회 예정)
해외연수	11.08 ~11.29	프랑스	<공공공간 예술창작>을 주제로 프랑스 마르세유 거리예술지구에서 해외연수 진행 ※연수 전일 참가 원칙. 입출국은 지정날짜 및 항공편에 따라야 함.
공유 워크숍	12월 중	한국	참가자 전원 해외연수 결과 공유

2. 협약기간 : 2015년 10월(협약체결 시) ~ 2015년 12월 31일
3. “협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협약기간 내 프로그램(사전 워크숍, 해외연수, 공유워크숍) 참가
  - 간담회, 세미나 등 프로그램 관련 행사 참석
4. 본 거리예술 전문가 양성과정은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인증사업으로 진행된다.

## 제2조 [협약 세부 내용]

1. “재단”은 “협약상대자”에게 해외연수 왕복 항공료, 프랑스 현지 이동 교통비, 해외연수 교육비, 숙박비, 식비 일부(평일 점심 식대), 민사책임보험, 국내 워크숍 및 부대프로그램 참가비를 지원한다.  
(왕복 항공료는 ‘2015-2016 한-불 상호교류의 해’ 공식인증사업으로 지원)
2. “협약상대자”는 해외연수 기간 동안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해외연수 기간 동안의 식대 일부 및 개인 체재비를 부담해야한다.
3. “협약상대자”의 해외연수 참가는 필수 사항이며 이외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국내워크숍에 불참할 시에는 사전에 반드시 “재단”과 협의해야 한다.
3. 기타 협약 조건에 포함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단 관계 규정에 따른다.

## 제3조 [책임]

1. “재단”과 “협약상대자”는 해당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상호 협의 하에 맡은 일에 책임과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협약상대자”가 자기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재단”에게 프로그램 운영 및 재산상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협약상대자”는 민·형사상 배상책임을 지며, 이때 “재단”은 본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재단”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협약상대자”에게 재산상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재단”은 민·형사상 배상책임을 지며, 이때 “협약상대자”는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취소하거나 쌍방의 협의 아래 프로그램을 취소할 경우 상호 간에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제4조 [권리양도]

1. 공유워크숍 결과물은 “재단”과 “협약상대자”가 공동으로 권리를 소유하며, “협약상대자”가 공유워크숍 결과물을 사용할 시 “재단”과 상의·협의해야한다.
2. 이 협약은 쌍방의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위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함.

2015. . .

(재단)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대표이사 조 선 희 (인)

(협약상대자)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성명 :

(인)